

의안번호	2212195
의 퇴 인	김위상 의원
회 답 일	2025.11.6.
추계번호	25B4412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둘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7억원, 2031년 7억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36억원(연평균 7억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등 (안 제3조의2)	7	7	7	7	7	36	7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본 추계결과는 향후 실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규모, 민간위원의 수 및 회의개최 횟수 등 주요 가정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노사 협력적 관계가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5의2. 제3조제1항의 지역 노사민정 지원에 관한 사항	의무규정
2	안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안 제3조의2(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등)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제2항)	의무규정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이 공동으로 함(제3항)	의무규정
		협의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함(제4항)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노사관계·고용경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5.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의무규정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인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음(제5항)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무·재량규정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운영, 사무국의 설치·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6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조(국가의 책무)	—	• 미대상 — 개정안은 국가의 책무에 대한 선언적 규정이므로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안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	• 미대상 — 개정안은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의 지원을 기속행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고용노동부는 지역 단위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 사업을 추진 중임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table><tr><th>사업명</th><th>2022</th><th>2023</th><th>2024</th><th>2025</th><th>2026(안)</th></tr><tr><td>상생협력확산지원 사업 (코드:2031-301)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td><td>1,600</td><td>1,600</td><td>1,200</td><td>1,200</td><td>2,110</td></tr></table> 주: 2023년 이전까지는 지역노사민정활성화 사업을 통해 추진되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사업명	2022	2023	2024	2025	2026(안)	상생협력확산지원 사업 (코드:2031-301)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	1,600	1,600	1,200	1,200	2,110
사업명	2022	2023	2024	2025	2026(안)										
상생협력확산지원 사업 (코드:2031-301)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	1,600	1,600	1,200	1,200	2,110										
3	안 제3조의2(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등)	○	• 공식추계 — 본문 내용 참조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과 국회 심의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임

- 개정안은 사무국의 설치·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현재 시행령상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이므로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임으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지금까지 협의회가 설치되지 않았던 지방자치단체 협의회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금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 개정안의 시행으로 2025년 9월 기준 협의회 미설치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추계 첫해인 2027년부터 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소요비용을 추계

1) 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고용심의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미 심의한 경우 협의회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구성·운영, 하부 협의체 및 사무국의 설치·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민간위원 수) 24인으로 가정
 - 민간위원의 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제외한 위원의 수(29명) 중 협의회의 인적 구성을 고려하여 산출²⁾
- (회의개최 횟수) 연 2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 (회의참석 사례금) 안건 검토비 등을 포함한 회의참석 사례금은 1회 회의 개최 시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³⁾
 - 이때, 회의참석 사례금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협의회 수) 2025년 기준 전체 지방자치단체 수(243개)에서 협의회 설치 지방자치단체 수(167개)를 차감하여 산출

[표 3]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설치 현황

(단위: 개소)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9.
지역노사민정 협의회 설치 현황	158	164	164	166	167	167
광역시	17	17	17	17	17	17
기초	141	147	147	149	150	150

주: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설치 현황은 조례 기준으로 산정

자료: 고용노동부

[표 4]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설치에 따른 비용추계: 2027~2031년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민간위원 수(A, 명)	24	24	24	24	24	—
회의개최 횟수(B, 회)	2	2	2	2	2	—
회의참석사례금(C, 만원/명·회)	20	20	20	20	20	—
협의회 수(D)	76	76	76	76	76	—
소계(E=A×B×C×D, 억원)	7	7	7	7	7	36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본 추계결과는 향후 실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규모, 민간위원의 수 및 회의개최 횟수 등 주요 가정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올림으로 산출

3)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기획재정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5.5.p.222.)

- 개정안에 따라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둘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7억원, 2031년 7억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36억원(연평균 7억원)으로 추계됨

[표 5]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억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등 (안 제3조의2)	7	7	7	7	7	36	7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본 추계결과는 향후 실제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설치 규모, 민간위원의 수 및 회의개최 횟수 등 주요 가정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향후 실제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설치 규모, 민간위원의 수 및 회의개최 횟수 등 주요 가정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